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4887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인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	2
※ 참고자료	6
1.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현황	6

I .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발의연월일 : 2024. 10. 24.
3. 회부연월일 : 2024. 10.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를 통한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위하여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에게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하여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생략) <u><신설></u>	제42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해당 특화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의료법」 제56조제2항¹⁾은 의료인등이 할 수 없는 의료광고(의료

1)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12호에서는 “제27조제3항2)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무역항, 면세점 등 제한된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³⁾.

개정안은 기존의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장소에 추가하여 외국인

2)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 등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광고는 하지 못한다.

1. 「개별소비세법」 제17조에 따른 외국인전용판매장
2.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에 따른 지정면세점
4.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5.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6.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지역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정부는 개정안에 따라 공항, 면세점 등 기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의 허용 장소에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추가되면,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이 보다 확대되고 관련 산업의 매출 및 고용 증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다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은 공항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하면서 단서를 두어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 등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광고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⁴⁾.

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 등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광고는 하지 못한다.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 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한편, 개정안은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자를 “특화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특구 내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만을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대상으로 대통령령에 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문 의 처
02) 6788-5459

[참고자료]

1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현황

특구명	특구 개요
서울강서 미라클 메디특구 (‘15년 지정)	■ (특화사업자 9개) 강서구청장, <u>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u>, <u>의료법인 성삼의료재단 미즈메디병원</u>, <u>웰튼병원</u>, <u>부민병원</u>, <u>우리들의료재단 우리들병원</u>, <u>강서힘찬병원</u>, <u>강서송도병원</u>, <u>강서세바른병원</u> ■ (특구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공항대로 일원(1,811,036.3㎡) ■ (특화사업)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의료관광 활성화사업 등 ■ (규제특례) 도로교통법, 공원녹지법 등 3개
영등포 스마트 메디컬특구 (‘17년 지정)	■ (특화사업자 12개) 영등포구청장, <u>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u>, <u>계피부과의원</u>, <u>김안과병원</u>, <u>대림성모병원</u>, <u>명지성모병원</u>, <u>명지춘혜병원</u>, <u>성애병원</u>, <u>영등포병원</u>, <u>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u>, <u>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u>, <u>CM병원</u> ■ (특구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여의도동, 대림동 일원(54,467.7㎡) ■ (특화사업) 의료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 의료관광 활성화지원사업 등 ■ (규제특례) 출입국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6개
메디시티 대구글로벌 의료특구 (‘21년 지정)	■ (특화사업자 6개) 대구광역시장, 중구청장, 수성구청장, (사)메디시티대구협의회, (사)대구의료관광진흥원, 수성대학교 총장 ■ (특구위치) 대구 중구(공평동 등) 및 수성구(만촌동 등) 일원(20,182.2㎡) ■ (특화사업) 4차산업 연계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조성사업, 외국인환자 유치 마케팅 및 활성화지원사업 등 ■ (규제특례) 출입국관리법, 특허법 등 3개
서구글로벌 하이메디 허브특구 (‘22년 지정)	■ (특화사업자 9개) 부산서구청장, <u>부산대병원</u>, <u>동아대병원</u>, <u>고신대복음병원</u>, <u>삼육부산병원</u>, (주)부산티앤씨, (주)리화, <u>의료관광협동조합장</u>, (주)씨에이치오힐스테이트 ■ (특구위치) 부산시 서구 부용동2가 86 외 108필지(144,296.3㎡) ■ (특화사업) 중증치료 중심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의료 R&D 역량 산업화를 위한 의료연구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 (규제특례) 출입국관리법, 특허법 등 6개

주: 밑줄 표시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총 19개, '25년 1월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